

시민권자 부모의 해외 태생 자녀의 신분

생명 과학 발달에 따른 이민법 개정이 마땅하다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출생 시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그런데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글 조문경 변호사



❶ 부모 모두 시민권자일 경우

자녀 출생 전 부모 중 한 명이 미국에 하루라도 거주한 적이 있으면 된다.

❷ 부모 한 명만 시민권자일 경우

시민권자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자녀 출생 전 5년간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를 했어야 하며, 5년 중 2년은 14세 이후에 거주했어야 한다.

❸ 시민권자인 어머니의 혼외 자녀

시민권자 어머니가 자녀 출생 전 1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❹ 시민권자인 아버지의 혼외 자녀

시민권자 아버지는 자녀 출생 전 5년간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했어야 하며, 5년 중 2년은 14세 이후에 거주했어야 한다. 또한 아버지는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자녀가 출생한 나라의 법에 따라 친권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해외 태생 혼외 자녀의 시민권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는데는 부담이 더해지므로, 혼외 자녀인가 아닌가는 이민법상 중요한 문제다. 또한 혼외 자녀일 경우 시민권자 아버지의 입증 부담이 어머니보다 과중하므로 남녀 불평등 규정을 담은 이민법에 대해 평등 보호 원칙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미국인 아버지와 멕시코인 어머니 사이에서 혼외자로 멕시코에서 태어난 Ruben Flores-Villar는 샌디에이고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마리화나 밀수 혐의로 체포되면서 시민권자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시민권자 아버지가 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아들은 시민권자 증명에 실패하여 패소와 동시에 범법 행위로 추방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시민권자 부모 사이에서 인공 수정으로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신분은 어떻게 될까? 예전에 한 미국인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이스라엘의 유명 병원을 찾았다. 정자와 난자를 기증 받아

인공 수정으로 9개월 후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였다. 그렇게 고대하던 아기를 얻은 기쁨도 잠시, 이 부부의 악몽은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으로 아들의 여권을 신청하려 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합법적으로 결혼한 시민권자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해외에서 출생하였다 하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미국에 살았음을 입증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그런데, 생물학적 부모, 즉 정자나 난자 기증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인공 수정으로 9개월간 품고 출산한 어머니는 이민법상 유전자를 나눈 생모가 아니므로 이 아이는 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아가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오려던 부부는 아들의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스라엘에서 발이 묶여 버렸다.

이 사건 이후, 국무부에서는 생물학적 어머니는 유전적(genetic) 어머니뿐 아니라 잉태를 하고 출산한(gestational) 어머니까지 포함한다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해외 태생 시민권 자녀에 관한 이민법 규정은 생식 보조 기술과 인공 수정을 가능케 한 과학의 발전이 있기 전에 제정된 것이다. 비록 다른 여성의 난자를 빌려 인공 수정을 했지만 내 뱃속에 아홉 달을 품고 직접 출산을 했는데, "당신은 이 아기의 엄마가 아닙니다"라고 이민법은 매정하게 거부했었다.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발상이란 것을 법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생명 과학의 발달과 동성 결혼 허용 등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이민법도 함께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



Celina Moon-Kyung Cho
Attorney at Law, Cho & Leigh PC

☎ 201-849-5000 Fax: 917-463-1590
www.choleighlaw.com
NJ : 460 Bergen Blvd., Suite 303,
Palisades Park, NJ 07650
NY : 164-01 Northern Blvd., 2nd Fl,
Flushing, NY 11358